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일, 전종덕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전종덕의원)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

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1개월 이상의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인바,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설 의료기관이 가지는 공공의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휴·폐업이 미치는 영향을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 측면

에서 검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다만,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 중에서도 기능이나 목적, 국가재정지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료차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일부 자구를 보완 및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40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0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로, “경우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하려면 미리”를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기 전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생략)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u> <u>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협의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협의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생 략) <u><신 설></u>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u>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